TRADE & ORIGIN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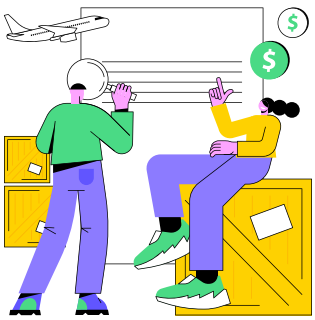

02
TRADE INSIGHT

①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하는 미국 통상 정책 및 원산지 대응
– 미국 CBP 비특혜원산지 판정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② 미 관세조치에 대한 주요국 대응과 시사점

③ 한국의 철강 원산지규정 강화와 우회덤핑 규정 시급하다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하는 미국 통상 정책 및 원산지 대응

-미국 CBP 비특혜원산지 판정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송경은
한국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장

권민경
한국원산지정보원
신통상규제팀장

박현혁
한국원산지정보원
신통상규제팀 전문연구원

- **트럼프 2기 미국의 통상 및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원산지” 중요성 확대**
-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및 신통상 규제 이슈 분석 자료 발간**
- **CBP 유사 사례를 통해 자사 제품의 원산지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거나 사전심사 신청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1. 들어가며

2025년 트럼프 대통령 재선으로 출범한 제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재차 전면에 내세우며, 통상 정책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특정 국가와의 무역적자 해소, 자국 산업 보호, 국가 안보 등을 명분으로 관세 조치 강화 및 무역 협상 재정비 등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은 2025년 신통상 규제팀을 신설하고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CBP[1] 사전심사 가이드 작성, 신통상 관련 이슈 제공 등 다각적인 연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2025년 상반기 동안 추진된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원산지정보원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025년 상반기 KIOI 미국 통상 정책 및 비특혜원산지 대응 주요 성과

구분	주요 성과
1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사례집 발간
2	미국 CBP 사전심사 제도 활용 가이드북 및 동영상 제작·배포
3	美 관세부과 현황 정보 제공 및 기업 지원 설명회 개최

2.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사례집 발간

2-1.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Origin Case』 발간

미국은 비특혜원산지 판단 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법 제301조, 정부조달협정(GPA)[2] 등 다양한 통상 규제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원산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FTA 등에서 적용되는 특혜원산지 기준과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정책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원산지로 판단되는 '이중 원산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실질적 변형 기준은 가공의 복잡성이나 제품의 본질적 성격의 변화 여부 등 정성적 판단 요소에 기반하기 때문에, 미국 CBP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통상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다 면밀한 사전 검토와 해석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과 관련한 법적 기준과 실무 사례를 정리한 『ORIGIN CASE』을 발간하였다. 본 간행물은 미국 CBP가 발표한 주요 사전심사

1)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 정부조달협정(GPA: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판정 사례들을 분석한 것으로, 우리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원산지 판단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ORIGIN CASE』에는 SE 케이블, 냉동 어류, 전동 모터 등 46건의 품목 사례를 수록하였으며, 각 사례는 품목 개요, 제조공정, 핵심 쟁점, 법적 근거, 판정 결과 등의 항목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은 비특혜원산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유사 사례를 통해 자사 제품의 원산지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거나 사전심사 신청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ORIGIN CASE』Vol.1을 시작으로 상반기 4회 발간을 완료하였고, 향후 대미 수출 주요 품목들에 대한 다양한 사전판정 사례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우리 원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Origin Case』 소개

Origin Case 표지

Origin Vol.1 Contents

CONTENTS

Case 1.	SE 케이블 (제8544.49호)
Case 2.	냉동 어류 (제0303호)
Case 3.	전동 모터 (제8501.10호)
Case 4.	Top Mount Assembly
Case 5.	스프레이 용기 (제8424.89호)
Case 6.	파이프 렌치

Origin Vol.2 Contents

CONTENTS

Case 1.	강철 금속 봉
Case 2.	스테인리스강 튜브 (제7304.41호 or 제7306.40호)
Case 3.	자동차 에어컨용 증발기 어셈블리 (제8414.59호)
Case 4.	스테인리스 강판 (제7219.90호)
Case 5.	스테인리스 강판 (제7219.90호)
Case 6.	이중 플랜지 휠 허브 어셈블리 (제8708.99호)
Case 7.	방향성 전기강판 (제7225.11호)
Case 8.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 (제8544.30호)
Case 9.	자동차용 전면유리 (제8708.22호)
Case 10.	벌크헤드 어셈블리 (제7305.31호)

Origin Vol.3 Contents

CONTENTS

Case 1.	자동차용 전면유리 세정 펌프 (제8413.70호)
Case 2.	시즈닝 솔트 (제2103.90호)
Case 3.	냉동 비건 베이컨 (제2106.90호)
Case 4.	참치 대용 식물성 단백질 (제2106.90호)
Case 5.	대추야자 설탕 분말 (제1106.30호)
Case 6.	가공된 황다랑어
Case 7.	크릴오일 구미 (제2106.90호)
Case 8.	자동차용 센터 스택 어셈블리
Case 9.	껌 (제2106.90호)
Case 10.	혼합감미료 (제2106.90호)

Origin Vol.4 Contents

CONTENTS

Case 1.	차량용 LED 램프 (제8512.20호)
Case 2.	코코넛 밀크 (제2106.90호)
Case 3.	냉동 구운 장어
Case 4.	인스턴트 누들
Case 5.	전기차 모터용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 (제8413.70호)
Case 6.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제7223.00호)
Case 7.	철강 코일 (제7212.40호)
Case 8.	흑마늘 시즈닝 (제2005.99호)
Case 9.	Pipe-in-Pipe 어셈블리 (제7306.90호)
Case 10.	김치 소스 (제2103.90호)

『Origin Case』 사례 예시 – 파이프 렌치 –

case
6

파이프 렌치

요약

사례명	파이프 렌치 실질적 변형 여부 판정	
사례번호	NY N332258 (2023.04.21.) 및 NY N332515 (2023.05.08.)	
사실관계	공통사항 한국 및 중국에서 생산된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조절 너트, 기타 부품을 중국에서 추가 가공 및 조립하여 미국에 수출	
	① NY N332258 한국 • 손잡이, 조절 조 생산 후 중국 수출 중국 • 고정 조, 조절 너트 생산 •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추가 가공 • 상기 4개 부품과 기타 부품 결합 조립 • 미국으로 수출	② NY N332515 한국 •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조절 너트 생산 후 중국 수출 중국 •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추가 가공 • 상기 4개 부품과 기타 부품 결합 조립 •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공통사항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조절 너트는 기능적 측면에서 모두 동등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품임	
	① NY N332258 실질적 변형 여부 한국산 부품의 용도는 이미 정해져 있으나 완성품 상태는 아니었고, 중국에서 추가적 가공과 다른 핵심 부품의 결합을 통해 완성품의 기능을 다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함 (중국산)	② NY N332515 실질적 변형 여부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들이 모두 한국에서 생산되었고, 해당 부품들은 중국으로 수입될 당시 파이프 렌치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중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한국산)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Origin Case』 사례 예시 – 파이프 렌치 –

Ⅰ 판정사례[4]

사 례 명 [파이프 렌치] 실질적 변형 여부 판정

사례번호 NY N332258 (2023.04.21.) 및 NY N332515 (2023.05.08.)

사실관계

요청자	Weihai Maxpower Advanced Tool Co., Ltd.	
제품	제품명	• 파이프 렌치 (Pipe Wrench)
	구성	• 손잡이 / 조절 조 / 고정 조 /조절 너트 / 핀, 스프링 등 • 톱니가 있는 두 개의 조를 가지고 있으며, 조절 너트를 이용해 파이프에 밀착하여 고정 및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됨
	용도	• 배관 부품의 조립 또는 해체 시 공구로 사용

제조공정 (① NY N332258)

상세공정

한국

1. 한국산 알루미늄 원재료로 손잡이 생산
2. 중국산 강철봉을 가공하여 조절 조 생산
3. 손잡이 및 조절 조 중국으로 수출

중국

4. 중국산 강철튜브를 가공하여 조절 너트 생산
5. 중국산 강철봉을 가공하여 고정 조 생산
6.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추가 가공(밀링, 열처리, 드릴링, 코팅)
7. 중국산 핀, 스프링 등과 함께 최종 조립
8. 작동 테스트 및 포장 후 미국 수출

4)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Origin Case』 사례 예시 – 파이프 렌치 –

ORIGIN CASE

제조공정 (② NY N332515)

01	02	03	04	05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조절 너트 생산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조절 너트 중국 수출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추가 가공	최종 조립	포장 후 미국 수출

상세공정

한국

1. 한국산 알루미늄 원재료로 손잡이 생산
2. 중국산 강철봉을 가공하여 조절 조 및 고정 조 생산
3. 중국산 강철튜브를 가공하여 조절 너트 생산
4.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및 조절 너트 중국으로 수출

중국

5.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추가 가공(밀링, 열처리, 드릴링, 코팅)
6. 중국산 핀, 스프링 등과 함께 최종 조립
7. 작동 테스트 및 포장 후 미국 수출

쟁점사항

✓ 실질적 변형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1 실질적 변형 여부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된 공정이나 재료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발생시켜야만 새로운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실질적 변형: 명칭(Name), 성질(Character), 또는 용도(Use)의 변화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 실질적 변형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해야 한다고 명시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이러한 평가는 하나의 요소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조립 작업이 단순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Origin Case』 사례 예시 – 파이프 렌치 –

CASE 6

관련 법령 및 분석

NY N332258 판정 결과

☑ 파이프 렌치는 크게 손잡이, 고정 조, 조절 조, 조절 너트로 구성되며, 고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절 너트를 조작하여 두 개의 조를 조여야 하므로 기능적 측면에서 상기 부품들은 모두 동등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이와 더불어, 한국에서 생산된 손잡이와 조절 조가 파이프 렌치에 사용될 용도로 제작된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중국으로 수입될 당시 파이프 렌치의 일부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함

☑ 대략적인 형태만 갖춘 손잡이와 조절 조가 중국으로 운송되어 추가 가공 후, 중국산 고정 조, 조절 너트, 기타 부품과 조립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이프 렌치의 원산지는 중국산이라고 판정함

NY N332515 판정 결과

☑ 한국에서 생산된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및 조절 너트는 파이프 렌치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부품들임

☑ 해당 부품들은 한국에서 파이프 렌치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중국에서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산지는 한국이라고 판정함

결론

✓ ① (NY N332258 사례) 파이프 렌치의 원산지는 중국임

✓ ② (NY N332515 사례) 파이프 렌치의 원산지는 한국임

Ⅲ 시사점

- 공구류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된 여러 부품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모든 부품들이 동등하게 중요할 경우, 각각의 부품이 생산된 국가, 기능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다만, CBP는 동일 물품이라 할지라도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상이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Ⅳ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32258 (2023.04.21.), https://rulings.cbp.gov/ruling/N332258
- CBP Ruling NY N332515 (2023.05.08.), https://rulings.cbp.gov/ruling/N332515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310,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2-2. 관세청과 협업을 통한 산업별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집 발간

『ORIGIN CASE』와 더불어 한국원산지정보원은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1편 – 철강제품』, 『제2편 – 자동차 부품』, 『제3편 – 식품류』, 『제4편 –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을 공동 발간하였다.

본 사례집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50%의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제품 그리고 자동차 부품,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미국 관세정책과 비특혜원산지 판정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CBP가 비특혜원산지 판단 시 고려하는 기준과 절차를 판정 사례 및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 제1편 철강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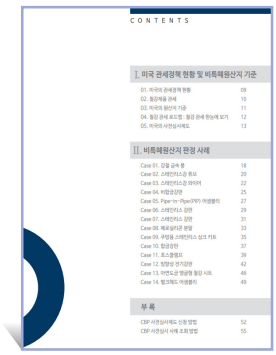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 제2편 자동차 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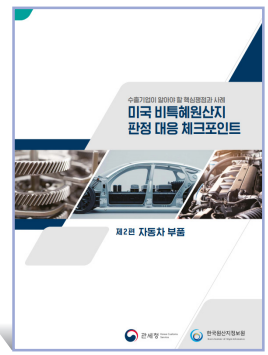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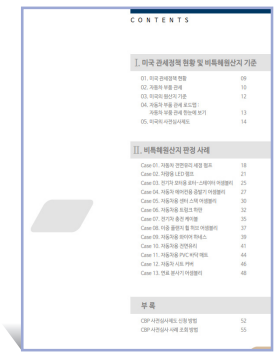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 제3편 식품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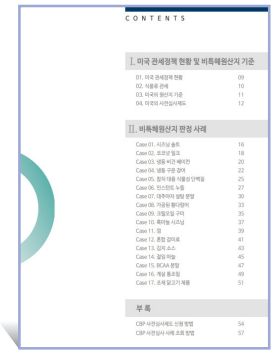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 제4편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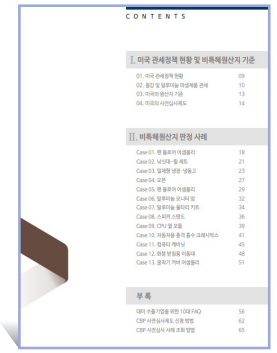

3. 미국 CBP 사전심사 제도 활용 가이드북 및 동영상 제작·배포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자사 제품의 원산지 판단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중 하나가 바로 CBP의 사전심사(Advance Ruling) 제도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관련 국문 활용 사례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실무자들의 제도 활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한국원산지정보원은 CBP 사전심사 신청 절차, 서류 작성 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한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신청 절차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연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CBP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 및 시연 동영상은 한국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CBP e-Ruling 신청 가이드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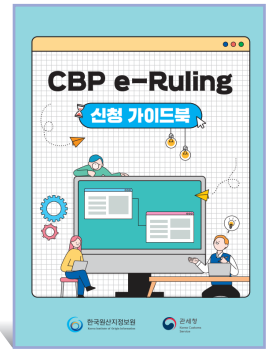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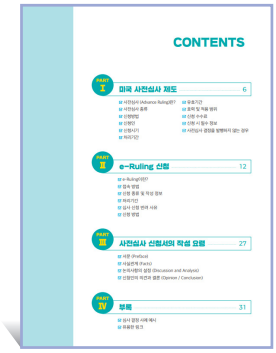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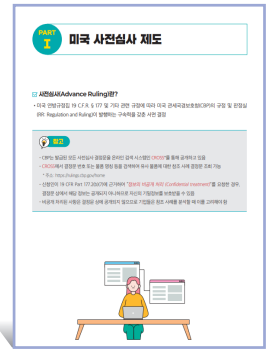

CBP e-Ruling 신청 동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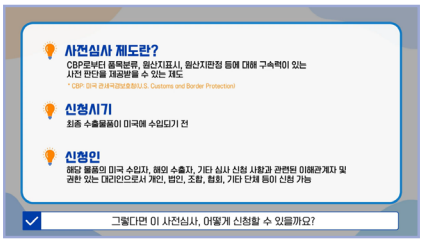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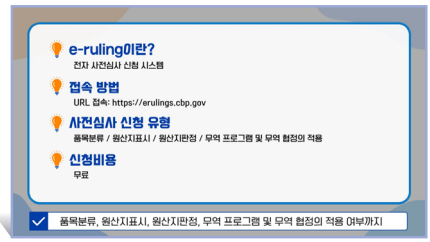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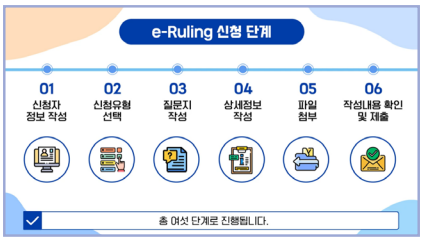

4. 美 관세부과 현황 정보 제공 및 기업 지원 설명회 개최

최근 국제비상경제권한법[3], 무역법 제301조,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을 근거로 한 미국의 관세정책은 변화 속도가 빠르고 예측이 어려워 국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미국 관세 부과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5년 4월 30일 한국원산지정보원은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美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미 수출기업 설명회』를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개최하였다. 본 설명회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급변하는 미국의 관세·무역 정책과 원산지 규제 변화에 대한 수출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최근 관세 부과 동향, 관세청 대응 방안, 미국 수출 시 통관 유의사항, 미측의 비특혜원산지 기준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향후에도 관세청, 지역 세관,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설명회 개최, 실무자 교육, 사례자료 발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출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美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미 수출기업 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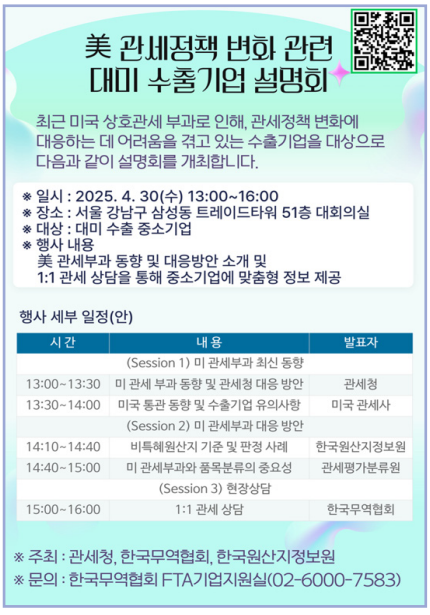

3)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

5. 향후 계획

2025년 상반기 한국원산지정보원은 급변하는 미국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실무 대응력을 높이고,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Origin Case』와 『철강제품 등 주요 산업별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사례집』 발간, 『CBP 사전심사 가이드북 및 동영상』 제작, 『기업 설명회 공동 개최』 등을 통해 미측의 비특혜원산지판정 기준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하반기에도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산업별·지역별로 특화된 비특혜원산지 대응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통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ORIGIN CASE』의 지속 발간, 신통상 규제 관련 수출기업 실태조사 자료 제공, 미 관세 부과 동향 및 원산지 관련 이슈 자료 제작 등의 연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보원이 제공하는 전문 정보들이 우리 중소기업의 원산지 리스크 대응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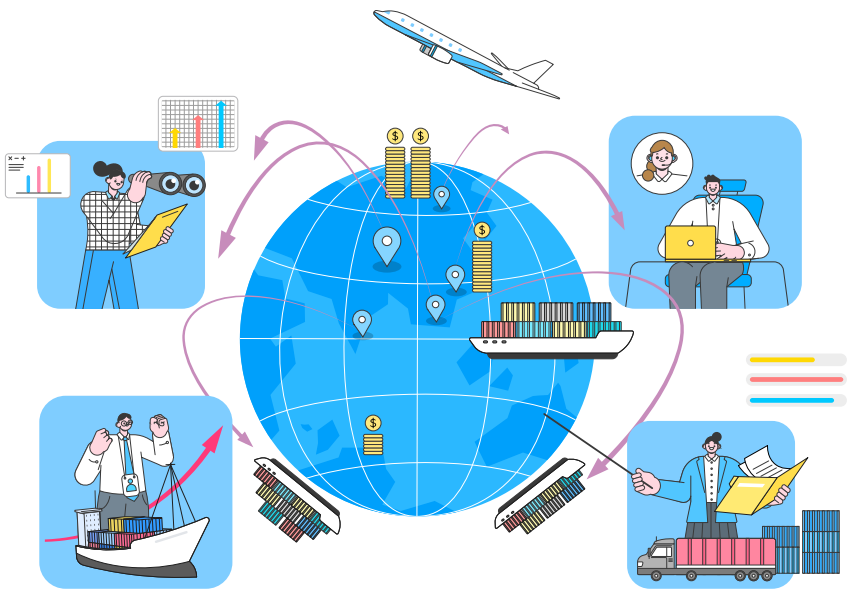

미 관세조치에 대한 주요국 대응과 시사점

강금윤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과장

1. 들어가며

지난 1월 취임한 미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흥이라는 목표 아래 광범위한 관세 조치를 단행했다. 당초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해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며 시작된 관세 조치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 품목별 관세를 거쳐 전세계·전품목 대상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로 확대됐다.

동맹국과 적국을 가리지 않는 관세조치로 전세계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도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부 전략에는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아 ①보복조치에 기반한 강경대응과 ②협조에 기반한 우호적인 협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중국, EU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강한 국가는 강경대응 기조를 보였으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우호적 협상 전략을 주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한국도 협상 의제를 구체화하는 등 향후 협상을 위한 초석 마련에 나섰다. 차기 정부 출범 직후 본격적인 양자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먼저 협상을 시작한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의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현황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바탕으로 일련의 관세 조치를 빠르게 현실화했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부터 추진된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이 지침은 불공정 무역을 해소하고 제조업 및 국경 문제와 관련한 경제안보 검토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관세 조치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캐나다·멕시코·중국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IEEPA는 비상상황이 외국에 기인할 경우 대통령에게 금융규제, 외국인 자산·거래 규제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 당초 중국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중국의 보복 및 미흡한 대응을 이유로 10%p의 관세를 추가 적용했다.

다음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자동차부품에 최대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경우 관세 부과 및 수입제한 등을 가능하게 하는데, IEEPA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조치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일부 국가·품목에 국한됐던 미국의 관세조치는 4월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도입으로 全수입국·全품목으로 확대됐고 국제사회에 큰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10%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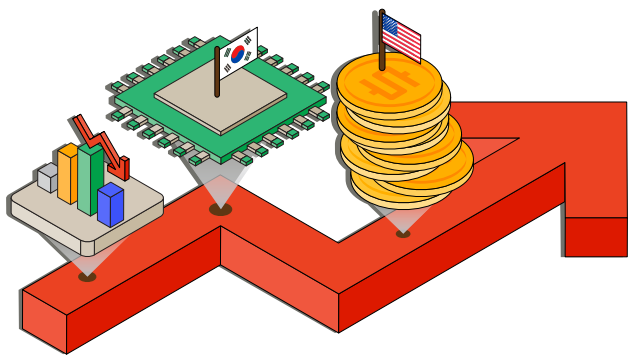

보편관세는 4월 5일부터 이미 시행중이며, 상호관세는 같은 달 9일 발효 직후 90일 유예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보복조치를 비난하며, 중국 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했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는 오는 7월 9일부터 재개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이 유예 기간동안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 협상에 착수하면서, 상반기 내내 이어진 관세 조치는 당분간 조정 국면에 접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관세조치 현황〉

현지 발표일	대상	대상국	관세율	최초 시행일	근거법
2월 1일	전 품목	캐나다·멕시코	최대 25%	2월 4일	IEEPA
		중국	10%+10%	2월 4일 및 3월 3일	
2월 10~11일	철강·알루미늄	모든 수입국	25%	3월 12일	232조
3월 26일	완성차	모든 수입국	25%	4월 3일	232조
	자동차 부품			5월 3일	
4월 2일	보편관세	모든 수입국	10%	4월 5일	IEEPA
	상호관세	57개국	국별 차등 (한국 25%)	4월 9일 (중국 外 90일 중단)	

자료 : 백악관 관보 참고하여 저자 정리
주: 관세 조치별 면제·연기 여부가 상이하므로 조치별 공식 문서 확인할 필요

3. 주요국 대응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조치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크게 ①보복조치에 기반한 강경대응과 ②협조에 기반한 우호적인 협상으로 나뉜다. 중국, EU 등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협상력이 높은 국가는 맞불 관세를 발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반면 아시아 주요국 등 무역·안보·경제 측면에서 대미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미국과 협상 채널을 적극 활용해 관세 면제나 유예를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중국: ①보복] 미 관세조치의 주요 타겟인 중국은 미국의 관세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보복관세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미국의 관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국의 관세가 인상될 때마다 중국도 보복 품목을 확대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중국의 보복관세는 3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에너지·농기계 등 제한적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한 1차 때와 달리, 2차 보복관세는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산물·육류·유제품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어진 3차 보복에서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및 인상에 맞서 중국도 동일한 세율로 관세를 인상했다.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중국 대응〉

미국 조치		중국 대응	발표일	시행일	주요 내용
對중 10% 관세	→	1차 관세	2025.2.4.	2025.2.10.	• 총 80개 품목*에 10~15% 관세 부과 * 원유, 액화천연가스, 농기계, 트랙터류 등
對중 10% 추가 관세	→	2차 관세	2025.3.4.	2025.3.10.	• 총 740개 품목*에 10~15% 관세 부과 * 밀, 옥수수, 소고기, 닭고기, 유제품 등
상호관세	→	3차 관세	2025.4.2. 2025.4.9.	2025.4.10.	•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 관세 부과 • 美 재보복에 추가 관세 34→84%로 상향
			2025.4.11.	2025.4.12.	• 美 재보복에 추가 관세 84→125%로 상향

자료 :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 공고 참고하여 저자 정리

중국은 관세 외에도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 신뢰할 수 없는 미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거래 제한 조치 등 다방면으로 미국을 압박했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미국 내에서도 중국산 저가 수입품 감소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됐다. 결국 양국은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고위급 대화를 통해 관세 인하 및 기타 보복성 관세 철폐에 합의하며 일단 협상을 마무리했다.

[EU: ①보복 및 ②협조 병행] EU도 단일 시장경제에 기반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3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발효되자 EU는 약 260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단계적 보복관세를 발표했다. 보복 품목에는 철강·알루미늄 및 그 반제품·완제품·파생제품이 포함됐으며, 최종적으로 1,600개 이상 수입품에 최대 25% 보복관세를 두 차례(4월 15일, 5월 15일)에 걸쳐 부과하는 방안이 회원국 간 합의되었다.

한편, EU는 강경 보복 조치를 예고하면서도 동시에 협상 기조를 유지했다. 4월 초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직후, EU 집행 위원장은 자동차·의약품·화학 제품 등 특정 산업재에 대한 '상호무관세(zero-for-zero)'를 제안하며 협상 의지를

적극 피력했다. 이후 미국이 상호관세를 유예하자, EU도 이에 상응하여 발표했던 보복 조치를 90일간 보류했다. EU는 대미 협상이 결렬될 경우 보복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협상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베트남: ②협조] 대미 무역의존도가 높은 베트남은 상호관세 부과 이전인 3월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시작했다. LNG, 자동차, 에탄올, 아몬드, 체리 등 다양한 미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했고 베트남 내 미국의 스타링크(Starlink) 위성 인터넷 서비스 출시를 허용하며 미국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6%의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자, 베트남 고위 관계자는 대미 관세를 아예 0(영)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협상에 나섰다. 총리는 성명을 통해 안보·방위 물자를 포함한 미국산 제품의 구매 확대를 약속했으며, 부총리를 미국에 급파해 관세 유예를 요청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90일 연기된 후에도 베트남은 협력·협조 기조를 이어갔다. 중국산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원산지 관리를 엄격히 하고 중국산 위조품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 및 미국 기업의 對베트남 투자 승인도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인도: ②협조] 인도 역시 일찌감치 대미 관세 인하에 나섰다. 양국 무역 협정 체결 논의를 가장 먼저 시작한 인도 모디 총리는 2월 방미를 앞두고 75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 인하를 발표했다. 또한 미국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디지털서비스세(DST, Digital Services

Tax)를 4월부터 철폐하여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주었다.

무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인도 정부는 현재 미국과 3단계로 구성된 무역 합의안을 논의 중이다. 합의안에는 산업재, 농산물 시장 접근,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올해 가을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에 맞추어 양국간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②협조] 2월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먼저 정상회담을 가진 이시바 일본 총리는 1조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LNG·천연자원 수입 확대를 약속했다. 또한 방위비를 늘려 중국 견제 목적의 안보 동맹을 강화할 것을 발표했으며 알래스카 석유·천연가스 개발 합작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경제·무역·안보 협력 전반을 아우르는 선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역시 상호관세를 피할 수는 없었다. 24%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일본 정부는 즉시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철회를 요청했다. 곧 협상을 시작한 일본은 쌀·자동차 등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라는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주일 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 인하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5월에 들어서는 미국과의 협상에 '완행 전략'을 보이며 미국 측 의도 파악에 나섰다. 미국이 그간의 관세 조치를 번복·완화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섣불리 협상 카드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측에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모든 관세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 한국의 대응

한국은 4월 한미 재무·통상장관 협의를 시작으로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의 6개 협상 의제를 설정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나섰다. 우리 정부는 그간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한미 FTA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0%대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미국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에서 한국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불명확한 상황이며, 한국은 신속한 타결보다는 신중한 접근 기조를 유지하는 양상이다.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이미 미국과 조기 합의를 이룬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협상에 임하게 될 우려가 있다. 미국이 선행 협상을 기준으로 후속 국가에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거나, 선례를 활용해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기에 관세 인하에 합의한 경쟁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른 협상이 능사는 아니다. 지난 트럼프 1기 당시 232조 철강 관세 협상처럼, 오히려 뒤로 갈수록 관세 면제와 유연한 쿼터를 확보한 사례도 있다. 중요한 것은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지 않은 선에서 절묘한 협상 개시 타이밍을 포착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각국의 대미 협상 진행 상황과 내용에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다.

5. 시사점

주요국들은 대미 의존도, 시장 규모, 안보 등 저마다 다른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협상 전략을 세우고 있다. 중국, EU 등 대미 무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거대한 내수 시장을 보유한 국가는 보복을 앞세운 강경 대응이 가능하지만, 무역·안보·경제 면에서 미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관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조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역 상대국이 보복에 나서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만, 반대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관세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과는 보복과 재보복을 거치며 긴장이 고조됐으나, 한 달여 만에 이뤄진 협상을 통해 관세를 10%로 임시 인하했다. 한편, 미국은 별다른 보복을 취하지 않은 영국과의 협상에서도 보편관세 10%를 유지한 만큼, 향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별국과의 협상에서도 기존 관세의 전면 철폐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 가운데 지난 5월, 중국과 영국은 우리보다 먼저 관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협상을 미국과 타결했다. 이들 국가가 조기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와의 무역전쟁 이후 교역국을 다변화했고, 그 결과 2018년 19.2%에 달했던 대미 수출 의존도를 2024년에는 14.7%까지 낮췄다. 중국으로서는 대미 수출 감소를 타국과의 교역 확대 및 내수 진작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는 곧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쉽게 양보하지 않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편, 영국은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가 아니고 방위비 등 안보 이슈도 적은 편에

속했다. 브렉시트 이후 상호 FTA 협상을 추진해 본 경험도 조기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한국은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고('24년 기준 18.7%), 무역수지 불균형, 방위비 분담 등 협상에 고려할 사항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한국은 13년째 미국의 FTA 파트너국이자 2년 연속 미국의 최대 그린필드 투자국으로, 한미간 무역·투자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지난 8년간 미국 내 80만 개 이상의 첨단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향후 미국으로의 투자·진출이 장기화하면서 한미 무역 불균형도 점차 완화될 수 있다. 한국은 미국 내 취약 산업의 공급망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우리의 역할과 협력 기회를 제시해 경쟁국보다 우호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다.

한편, 우리 기업은 미국의 관세 조치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보복관세 동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U, 영국 등 주요국은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현지 통상 기조 변화를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중 무역합의와 별개로 중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수입규제와 수출통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오는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도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앞으로 전개될 한미 무역협상이 적어도 우리 기업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한국의 철강 원산지규정 강화와 우회덤핑 규정 시급하다

유승록
스틸앤스틸 철강산업연구소 소장

1. 한국, 철강 원산지 무엇으로 판정하나?

철강재의 원산지규정은 대체로 '제강기준', '부가가치기준', 'HS Code 4자리 변경 기준'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한국은 HS Code 4자리 변경을 원산지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다.[1] 즉, 수출국이 HS 7208인 열연강판을 수입해서 HS 7209인 냉연강판으로 가공한 후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국은 열연강판을 생산한 국가가 아니라 냉연강판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베트남이 중국으로부터 열연코일을 수입해서 냉연강판으로 가공하여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중국산이 아니라 베트남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한국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 중국은 열연강판을 베트남으로 수출하여 냉연강판으로 가공한 후 한국으로 수출하면 베트남산 냉연강판이 되어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1) 철강재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산지 판단 기준은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음

미국은 수입 철강제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소위 말하는 '제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철강 최종 제품을 생산한 국가가 아니라 그 철강재를 생산하기 위한 최상위 공정인 제강공정에서부터 최종 제품의 생산공정까지를 하나의 일관공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제강기준의 원산지규정을 채택할 경우 위의 사례에서 본 베트남산 냉연제품은 베트남이 원산지가 아니라 중국이 원산지가 된다.

또 다른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가가치 기준인데,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이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 40%를 원산지 판정 기준이라고 한다면 수출제품의 최종가치에서 이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한 제품의 가치를 제하고 난 뒤의 가치가 수출제품 총가치의40% 이상 되어야 한다. 만약 베트남이 열연제품을 중국으로부터 톤당 60만원에 수입하여 냉연제품으로 가공한 후 수출한다면 수출가격이 톤당 1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베트남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 이하이면 원산지는 베트남이 아니라 중국산이 된다.

[표] 철강제품의 HS Code별 제품명

HS Code 72류 철강		HS Code 73류 철강제품	
7201	선철	7301	강 널말뚝 및 용접형강
7202	합금철	7302	궤조 및 부품
7203	직접환원철	7303	주철관
7204	스크랩	7304	강관
7205	선철 파우더	7305	용접강관
7206	잉곳	7306	기타 강관
7207	철 반제품	7307	강관 연결구
7208	열연강판	7308	강구조물
7209	냉연강판	7309	철강 저장조
7210	도금강판	7310	철강 비압축용기
7211	열연협폭강대	7311	압축용기
7212	냉연협폭강대	7312	강연선
7213	열연봉강	7313	강 유자선
7216	기타봉강	7314	철강 망 등
7217	형강	7315	강 체인
7218	스테인리스 반제품	7316	철강 닻 및 부품
7219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광폭)	7317	강 압정 등
7220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협폭)	7318	철강 볼트, 너트 등
7221	스테인리스 봉강	7319	철강 침, 핀 등

HS Code 72류 철강		HS Code 73류 철강제품	
7222	스테인리스 형강	7320	강 스프링
7223	스테인리스 강선	7321	철강 스토브,조리기 등
7224	합금강 반제품	7322	강 방열기
7225	합금강 평판압연제품(광폭)	7323	철강 주방용품
7226	합금강 평판압연제품(협폭)	7324	철강 위생용품
7227	합금강 봉강	7325	철강 주물제품
7228	합금강 기타 봉강	7326	기타 철강제품
7229	합금강 강선		

2. 한국, 철강 원산지 규정 무용지물?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철강재의 수입에 대해 HS Code 4자리 수 변경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FTA 협정에서도 한국은 철강제품에 대해 HS Code 4자리 수 변경을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WTO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WTO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일반관세 8%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WTO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재의 경우에는 원산지규정이 HS Code 4자리 수 변경 기준인지, 부가가치 기준인지, 아니면 제강기준인지가 전혀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동시에 FTA 회원국인지 아닌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WTO 회원국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된다. 즉 현재와 같은 철강제품의 HS Code 4자리 수 변경 기준은 규정으로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거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이다.

3. 철강 원산지 규정 강화 필요한가?

최근 국내에서는 원산지규정을 '제강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철강 수입 관세율이 '0%'인 경우, 원산지 규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가?

이는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구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여 수입되는 모든 철강재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북미자유무역협정 당사국인 멕시코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미국은 한국과 같이 HS Code 4자리수 변경 기준의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상정해보자. 이때 한국이 미국의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열연제품(HS 7208)을 멕시코로 수출한 후 냉연제품(HS 7209)으로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한다면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미국의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따른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 미국의 원산지규정인 HS Code 4 자리 수 변경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원산지가 한국이 아니라 멕시코로 판정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제3국 우회수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미국이 '제강기준'의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제3국 우회수출이 가능할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전 사례와 동일하게 멕시코로 수출된 한국 열연제품이 멕시코 내에서 충분히 냉연제품으로 가공되어 미국으로 수출되었다 하더라도 원재료인 슬라브를 만드는 제강공정이 한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냉연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가 아니라 한국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 사례와는 달리 한국은 미국의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따른 관세를 지불해야만 한다.

즉, 철강원산지규정의 강화는 최근과 같이 철강제품에 대해 다양한 무역구제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3국 우회수출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한국도 최근 스테인레스강판, 열연강판, 후판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거나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구제조치들이 시행될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제3국 우회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원산지규정의 강화는 필요하다.

4. 우회수출 방지 규정도 필요하다

최근 한국에서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이어지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중국 철강업체들이 자국 내에서 일부 경미한 가공 과정만을 거쳐 HS code를 변경한 후 수출하는 방법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자국내 우회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와 같은 HS code 4자리수 원산지규정으로 방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에서도 자국내 우회수출을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더하여 제3국 우회수출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내 철강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제3국 우회수출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였다. 한국은 2021년 9월부터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열연 및 냉연 강판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베트남산은 제외되어 있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스테인리스 열연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여 스테인리스 냉연제품으로 가공한 후 한국으로 우회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인 인도네시아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은 당시까지 자국내 우회수출이든 제3국 우회수출이든 우회수출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없었다. 그 대신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해 별도로 반덤핑 제소를 하였고,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향후 5년간 11.37%~18.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상황이다. 만약 제3국 우회수출에 대한 규제가 있었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조치는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사실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제3국 우회수출 방지 문제는 지금부터가 더 문제이다. 최근 한국의 최대 수입품목인 일본 및 중국산 열연강판 그리고 중국산 후판에 대해 국내업체들이 반덤핑을 제소하였고,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만약 높은 수준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면 수출국들은 반덤핑관세 회피를 위해 이들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한 후 HS code 4자리수의 변경을 거쳐 우회 수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다면 반덤핑 관세의 무역구제 조치가 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제3국 우회수출에 대한 규정의 제정이 시급한 이유이다.

5. 미국, 유럽 등의 우회덤핑 조사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전세계적으로 철강재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되면서 우회덤핑에 대한 규제도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회덤핑이 그만큼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미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우회덤핑 조사를 경험한 바가 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을 중국산 철강재의 우회덤핑 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선 미국이나 유럽 등 우회덤핑 조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 수출할 경우, 중국산 사용을 극히 자제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내수용으로 중국산을 활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2017년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반덤핑에서 한국 철강시장을 특별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으로 인식하고 높은 마진율을 최종 적용한 바 있다. 한국 철강업체들의 제소로 미국의 국제무역법원(CIT)이 마진율 재산정을 명령했으나, 중요한 것은 미국 상무부가 왜 한국 철강시장을 PMS 상황으로 판단했냐는 것이다. 그 근거 중의 중요한 하나가 '저가의 중국산 유입으로 한국산 열연코일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것이었다. 즉, 수출제품에는 한국산 철강재, 내수용에는 저가의 중국산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저가 중국산이 국내 철강가격을 왜곡시킨다고 간주하여 높은 반덤핑마진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중국에 수입규제 강도를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사례는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제3국 우회덤핑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재 선택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상황에서 자칫 가격경쟁력만을 고려하여 값싼 수입산 소재를 사용할 경우 우회덤핑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